

수혈관리실 근무인력의 교육기준(제12조의5제2항 관련)

1. 교육 내용: 수혈관리업무의 개요, 안전하고 적정한 수혈관리 지침, 수혈 관련 부작용에 대한 대응방법, 수혈 관련 검사방법, 수혈 관련 자료의 수집·분석 방법 등
2. 교육 이수시간: 매년 8시간 이상
3. 교육 기관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
 - 가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
 - 나. 「의료법」 제28조에 따른 의사회 또는 간호사회
 - 다. 「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」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
 - 라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혈관리 관련 전문 학회·단체
4. 그 밖의 사항: 수혈관리실 근무인력(수혈관리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이 제3호라목에 따른 전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·워크숍에 매년 8시간 이상 참석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.